

"주 최대 52시간 시행,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"



고용노동부

고용노동부

수신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
(경유)

제목 배달대행원(특고) 적용업무 처리 지침 시달

1. 배달대행원(특고)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현장에서 적용 및 보상 처리함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불임과 같이 개선하여 시달합니다.
2.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동 지침을 홈페이지 공개, 소속기관 안내 및 교육자료 등에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불임: 배달대행원(특고) 산재보험 적용 및 보상관련 업무지침 1부. 끝.

수신자

고용노동부장관



협조자

시행 산재보상정책과-2443 (2019.05.17.) 접수 적용계획부-1867 (2019.05.17.)
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, 정부세종청사 11동 / www.moel.go.kr
(어진동)
전화 044-202-7705 전송 044-202-8091 / yeosun25@korea.kr / 비공개(5)

배달대행원(특고) 산재보험 적용 및 보상관련 업무 지침

□ 검토 배경

- (실태) 배달앱 개발회사와 배달앱을 이용하는 배달대행업체들은 각각 독립된 개별 사업장으로, 각 업체 사업주는 자력으로 배달원을 모집하여 소속 배달원에 대한 산재보험을 가입
 - 일부 지역에서는 원활한 배달서비스를 위해 같은 배달앱을 사용하는 인근지역 업체들 간 콜을 공유하고 있어, A업체 소속 배달원이 B업체 또는 C업체 콜을 받아 배달할 수 있음
- * 배달원 1명당 하루 평균 배달 20건 중 타업체 콜이 8건(40%) 이상('19.3월 대전지역 기준)
- (문제점) A업체 소속 배달원이 B업체 콜을 받아 배달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, 중기사업주로 이중 가입한 것이 아닌 이상 산재인정이 안돼 자비로 처리해야 함

□ 개선 내용

- 전속성 기준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되는 배달원이 소속 업체와 콜을 공유하는 다른 업체의 콜을 받아 배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, 비록 사고 발생 원인이 된 사업장에는 전속성이 없더라도, 소속 업체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산재처리(단, 개별요율에는 반영 안함)
- * 확인사항: ① 전속성 기준에 따라 전속성이 인정되는 특고일 것 ② 전속된 업체와 콜을 공유하고 있는 업체의 콜을 받다가 발생한 재해일 것

□ 시행일 및 적용례

- 시행일: 2019. 5. 3.
- 적용례: 시행일부터 적용하되, 지침 시행일 이전 사건이라도 관련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동 지침을 적용하여 판단